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

제 정 2024.7.31. 제165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의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관련 조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하여 대학발전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학발전계획”이라 함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대학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세부실행계획 및 예산 등을 포괄하여 정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기능) 대학발전계획의 수립과 운영, 성과평가와 환류를 위해 대학발전기획위원회와 대학발전평가위원회를 둔다.

① (대학발전기획위원회) 대학발전기획위원회는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그 구성은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1. 대학의 이념, 목표 및 비전에 따른 대학 운영과 관련된 대학발전계획의 추진전략, 세부과제 등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대학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내·외 환경 및 의견수렴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대학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재정 확보 및 운영,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대학발전계획과 학사운영의 연계성 확보에 대한 사항
5. 대학발전계획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연차 평가 결과보고서 및 환류 검토
7. 기타 대학 발전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대학발전평가위원회) 대학발전평가위원회는 대학발전계획의 운영 평가 및 환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위원은 학내 전임교원 5명 이내와 외부위원 2명으로 하여 기획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한다.

1. 대학발전계획에 대한 자문
2. 대학발전계획의 운영 실적 평가
3. 대학발전계획의 운영 실적에 대한 환류
4. 기타 대학 발전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 (주무부서) 대학발전계획 수립, 소관 위원회 운영, 평가, 환류 등 대학발전계획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기획팀에서 담당한다.

제4조(대학발전계획 수립) ① 대학은 매 10년 단위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대학의 이념, 교육목표 및 비전에 따른 중장기발전계획의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소요예산의 내용을 포함한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수립된 대학발전계획은 대학의 대내·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③ 대학발전계획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대학발전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대학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제5조(대학발전계획 추진) ① 대학발전기획위원회는 대학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학발전계획에 기초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는 대학발전계획 및 제1항의 연차별 핵심 추진과제에 따라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추진한다.

③ 각 부서는 매 학년도 말까지 부서별 대학발전계획 추진결과를 자체평가한 뒤 자체평가보고서를 대학발전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이행실적 연차평가) ① 대학발전평가위원회는 각 부서의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발전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연차평가에는 대학발전계획 성과지표 달성 정량평가, 추진내용 정성평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연차평가는 1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연차평가 결과 환류) ① 대학발전기획위원회는 대학발전평가위원회의 연차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대학발전계획 이행 실적과 함께 종합하여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각 부서에 평가 결과를 환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서평가 결과는 그 소속 구성원의 인사평가 및 성과급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대학발전계획 예산 확보 및 집행) 대학은 발전계획이 실현가능하도록 대학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